

Monthly Legal Update - 2022.06.

DR & AJU LLC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

최신 판례

2018도138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2.5.26.)

◆ 사안의 개요: A경제TV에서 증권분석전문가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방송에서 사전에 매수해 둔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한 후 매수 추종자의 유입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17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 쟁점:

- (1)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에서 말하는 '증권의 매수 추천'의 의미
- (2) 피고인이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1심: 무죄, 환송 전 원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 무죄

입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만을 따로 떼어내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P210N5B0B9Q1V2W3Z3K5X6I8S9Z2

◆ 관련판례

2018도84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제176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음(제443조).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 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의 전부를 뜻하므로, 시세 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 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됨

주요 이슈

[한국경제]기관투자가 보유 코인, 2년 새 22배 폭증
[한국경제]당국, 금융회사 부실 차단 선제적 대응 나선다

기업

최신 판례

2017다247848 구상금 (대법원 선고일자:2022.6.9.)

◆ 사안의 개요: A해양은 해상운송인인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았는데, 화물이 인도 당시 이미 손상된 상태였음. A해양은 피고에게 제소기간 연장 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음. 원고는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A해양에 이 사건 화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인도일 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1년을 초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쟁점:

- (1) 피고의 제소기간 연장 동의가 유효한지
- (2)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소멸 시효 완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1심: 각하판결, 원심: 항소기각

입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적합 판정받은 자동차 검사 시 증빙사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검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편의를 위한
https://opinion.lawmaking.go.kr/qcom/gqLmPo/68574?pageIndex=2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Q2PQJ3D3P0O1Z6B3C9R3M0S5N5R0

◆ 관련판례

2010도4846 자동차관리법 위반

- **판시사항:** 시설대여업자인 甲 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乙이 甲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甲 회사의 자동차검사업무 담당자 丙이 구청장 명의의 정기검사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乙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안.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 여시설이용자인 乙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와 丙에 대한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구 자동차관리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2호에서는 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은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시설대여업자에게 부과된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대여 시설이용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되고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는 더 이상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그리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대여업자가 스스로 검사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3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함

주요 이슈

[중앙일보]서울시, 신사업 분야 5200개 기업 규제개혁 지원코
[서울경제]최저저금 노사 요구 차이, 23년 만에 두번째로 낮았다

인사·노동

건설·부동산

최신 판례

2022도34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2022.6.9.)

◆ 사안의 개요: 맨홀과 연결된 지하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내부 철제 폐기물 등을 절단하기 위해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던 작업 인부 3명이 사망하자,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공동수급회사 2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한 사안

◆ 쟁점:

- (1) 사고장소가 오염된 흙, 석은 물, 오수 등에 의하여 질식,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하여,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밀폐공간 작업 중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 (2) 고압산소절단기 사용이 불가피하고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1심: 유죄(각 벌금 1,500만원), 원상: 공소장변경으로 제1심 파기하고 다시 유죄(각 벌금 1,500만원)선고

입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o/68382>

◆ 관련판례

2019도144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판시사항: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함.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됨

주요 이슈

[한국경제] "임원이 성과급 결정하는 인사제도는 적법" [아시아경제] 대법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 아냐"... 의사의 임금채권은 민사채권

최신 판례

2020다253515 부당이득금 등 (대법원 선고일자:2022.5.26.)

◆ 사안의 개요: 피고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원고들에게 임대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들은 위 초과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약정이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초과 임대보증금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피고는 상한액 초과 부분을 무효로 볼 경우라도 무효행위 전한 법리에 따라 표준임대료(차임) 조건의 임대차계약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초과부분의 해당 임대료(차임) 상당액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상계한다고 항변함

◆ 쟁점:

- (1)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의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가법적 의사로 인정하여 무효행위 전환이 허용되는 기준
- (2)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 산정시 건설원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국민주택기금 용자금의 범위

-1심: 원고 일부 승, 원상: 원고 일부 승

입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강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J2M0K5K0D3P1X1W1Y7Z3T2Q3Z3L4

◆ 관련판례

2021도153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 판시사항: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

-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및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현행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주요 이슈

[한국경제] 국내 건설사의 베트남 시장 진출 위해 팔 걷어붙인 국토부 [서울경제] 가계 양도계약 체결 뒤 양수인 몰래 보증금 썼다면 횡령?...대법 "형사처벌 대상 아냐"

공정거래

최신 판례

2020두36267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대법원 선고일자:2022.5.26.)

◆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기업집단 甲에 속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기업집단 甲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① 원고 A가 원고 B에게 직원들을 전직 파견하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 행위, ② 원고 A가 원고 B를 통해 맥주용 알루미늄 캔을 구매할 행위, ③ 원고 A가 C회사로 하여금 알루미늄 코일을 원고 B를 통해 구매하도록 한 행위, ④ 원고 B가 자신이 보유하는 D회사 주식 매각에 관하여 E회사와 협의할 당시, 원고 A가 향후 D회사에게 지급할 업무위탁비 중 마진에 해당하는 기업운영비 지급기준을 인상해주시기로 합의한 행위, ⑤ 원고 A가 C회사로 하여금 글라스락 캡을 원고 B를 통해 구매하도록 한 행위가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

◆ 쟁점:

-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요건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

-1심: 공정거래사건이므로 해당 없음, 원상: 원고 A 일부 승소 원고 B 패소

입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기존 이상으로 변동했을 때 계약상 납품대금 조정 방법에 따라 조정 지급하도록 하며, 위반시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태료 부과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I2P0O6N0F8P1O6P5COO2F3J2D2B7

◆ 관련판례

2015두3825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 판시사항:

-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다는 의미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판결요지:

- [1]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 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함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주요 이슈

[중앙일보] 공정위, 구광모 LG-구본준 LXX 친족관리 인정 '각각 규제'
[중앙일보] 가맹점주 "bhc, 튀김유 구입 강제"…bhc "이미 무혐의 받아"

조세

최신 판례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2022.05.13.)

◆ 사안의 개요: 표준지 소유자인 원고와 표준지 등에 관한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
◆ 쟁점: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산세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1심: 원고패, 원상: 원고승

입법(안)

[조세특례제한 일부개정법률안]

해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 제도를 제도입하고, 국내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W2F0V5R1X2J1E7Z1X1K4Q1F2E8P1

◆ 관련판례

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독일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같은 외국법인인 乙의 지분 100%를 보유하던 중 乙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乙 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이 甲 법인에 이전되었고, 甲 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乙 법인 또는 그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식의 이전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한 사안. 甲 법인과 乙 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라 乙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甲 법인에 이전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목 및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주식의 양도' 및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과세에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甲 법인과 乙 법인 사이의 흡수합병 전에 甲 법인이 乙 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병에 따라 乙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甲 법인에 이전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목 및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주식의 양도' 및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고, 甲 법인과 乙 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위 주식의 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과 달리 과세하더라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없음. 또한 그 과세를 두고서 그 설립의 준거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요 이슈

[아시아경제] 興 물가특위,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 30%~50% 확대 나선다
[국민일보] 로또가 이중과세? 당첨금 비과세 기준 5만~200만원 오르나

담당 변호사 및 전문 인력

마케팅총괄



차동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금융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50
E : kij@draju.com

기업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인사·노무



이승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91
E : stlee@draju.com

건설·부동산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공정거래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조세



김신희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57
E : shiny@draju.com